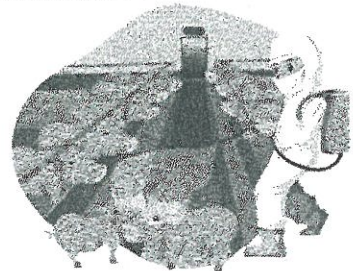


#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1588-4060/9060으로 신고합시다

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관계자 여러분들의  
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.

## 신고포상금 지급대상

-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· 구제역 · 돼지열병 · 소해면상뇌증 의심축 · 발생확인 신고자  
- 다만, 당해 가축의 소유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-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 
- 돼지열병 · 뉴캐슬병 예방접종 명령 위반자  
-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
- 이동제한 등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· 도축장영업자 등



## 신고절차



##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

지급대상	신고포상금	결정기준
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	100만원	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: 양성
	50만원	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(정밀검사 결과 : 음성)
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자	50만원	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: 양성
소해면상뇌증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	100만원	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: 양성
	30만원	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(정밀검사 결과 : 음성)
돼지열병 또는 뉴캐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	30만원	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
브루셀라병 검사 또는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	30만원	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
가축사육시설·도축장 등의 소독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	20만원	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
격리·역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	20만원	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림축산검역본부

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